

심사보고서

충청북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
설치 및 운용 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의안 번호	255
----------	-----

2019. 9. 2. (월)
교 육 위 원 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 출 자: 충청북도교육감

나. 제출일자: 2019년 8월 13일

다. 회부일자: 2019년 8월 14일

라. 상정일자: 2019년 8월 23일

(제37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)

마. 주요내용

-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, 심사의결(원안가결)

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: 서동학 의원)

가. 제안이유

- 충청북도교육청의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등을 조정하여 교육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

나. 주요내용

- 기금 설치 목적에 관한 사항(안 제1조)
- 기금의 조성에 관한 사항(안 제3조)
- 기금의 용도에 관한 사항(안 제4조)
-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(안 제5조)
- 기금의 운용심의에 관한 사항(안 제6조)
- 회계관직 지정에 관한 사항(안 제7조)

3. 검토보고 요지

(수석전문위원 최경분)

- 본 조례안은 2017.10.24. 개정된 「지방재정법」 제14조에 따라 충청북도교육청의 회계연도 간 재원을 적절히 조절하여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에 따른 비효율적 운영을 방지함으로써, 교육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용하고자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 기금을 설치하여 관리·운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
-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재정 안정화 기금의 존속기간(2023년 12월 31일까지) 및 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기금 설치의 근거를 규정함
- 기금 조성 재원과 용도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와 안 제4조에 명시하였으며, 안 제5조와 안 제6조에 기금의 운용 및 관리, 운용 심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
-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재정안정화기금 도입 계획 및 기금 조례 표준안을 바탕으로 세입 및 결산상의 잉여금 등 여유재원이 발생한 해에 그 일부를 기금으로 적립하고 세입이 부족한 해에 적립된 기금을 회수하여 사용하도록 하여 재정 운용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한다는 측면에서 조례의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되며, 조례안의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는 점에 비추어 타당한 조례안이라고 판단됨

4. 질의 및 답변요지: “생략”

5. 토론요지: “생략”

6. 심사결과: “원안가결”

7. 소수의견요지: “없음”

8. 기타 필요한 사항: “없음”

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:

-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

충청북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재정법」 제14조에 따라 충청북도교육청의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등을 조정하여 교육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기금의 설치) ① 충청북도교육감(이하 “교육감”이라 한다)은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(이하 “기금”이라 한다)을 설치한다.

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. 다만,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.

제3조(기금의 조성)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

1. 교육비특별회계 출연금
2. 기금운용수익금
3. 그 밖의 수입금

② 교육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1항제1호에 따른 출연금으로 매년 기금에 적립할 수 있다. 다만,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적립하지 않을 수 있다.

1. 최근 3년 평균증가율 비교 등을 통해 세입재원이 현저히 증가했다고 판단될 경우,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거쳐 교육감이 결정한 금액
2.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,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거쳐 교육감이 결정한 금액

제4조(기금의 용도) 기금은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한다. 다만, 한 회계연도에 적립 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.

1. 교육비특별회계 세입 중 「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」 제3조에 따른 보통교부금과 제11조에 따른 일반회계 전입금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 금액보다 감소하여 부족한 재원으로 충당할 경우
2. 대규모 재난재해 대응 및 예방 등을 위해 기금 사용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로서 교육비특별회계에 편성된 예비비로 충당할 수 없는 경우
3. 임대형민자사업(BTL) 지급금에 충당할 경우
4. 노후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 및 개축, 교육행정기관 신설·이전·증축·개축 등 장기간이 소요되는 시설투자로서 여러 회계연도에 걸쳐 투자가 필요한 경우
5. 그 밖에 기금의 관리·운용에 필요한 경비

제5조(기금의 관리 및 운용) ① 교육감은 기금을 금융기관에 예탁하여 안정성·수익성을 고려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한다.

② 교육감은 기금을 충청북도교육청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·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.

제6조(기금의 운용심의)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·운용하기 위하여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(이하 “심의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
2.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
3. 기금의 조성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

4.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범위에서 세부항목 지출금액 변경에 관한 사항
 5. 그 밖에 기금의 관리·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- ③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는 「충청북도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」에 따른 충청북도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할 수 있다.

제7조(회계공무원) ① 교육감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·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.

1. 기금운용관: 기획국장
2. 분임기금운용관: 예산과장
3. 기금출납원: 교육재정안정화기금업무 담당 사무관

② 기금운용관(분임기금운용관을 포함한다)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.

제8조(관계규정의 준용)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은 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」을 준용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충청북도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6호를 제7호로 하고,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6. 「충청북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 제6조제2항에 관한 사항

관계 법령

□ 지방재정법

[시행 2019. 4 17]. [법률 제15803호, 2018. 10. 16., 일부개정].

제14조(지방자치단체 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등) ① 지방자치단체는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등을 조정하고,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세입 및 결산상 잉여금 등의 일부를 재원으로 지방자치단체 재정안정화기금(이하 “재정안정화기금“이라 한다)을 설치할 수 있다.

② 지방자치단체가 한 회계연도에 재정안정화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재정안정화기금 적립금 총액 중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. 다만,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정안정화기금의 조성, 용도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[본조신설 2017.10.24.]

충청북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재정수반요인

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「충청북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4항

3. 미첨부 사유

이 조례안은 「지방재정법」 제14조에 따라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함으로써 기금을 조성하고 사용용도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조례 시행에 필요한 별도의 비용은 수반되지 않음.